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방송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홈쇼핑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도모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 및 상생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아래 각 호 및 이 가이드라인의 다른 규정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방송법」 및 기타 관련 법령상의 정의에 따른다.

1. ‘홈쇼핑방송사업자’란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2. ‘납품업자’란 거래방식에 상관없이 홈쇼핑방송사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홈쇼핑방송사업자에게 공급(홈쇼핑방송사업자가 판매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3. ‘홈쇼핑 방송편성’이란 방송되는 상품판매방송 프로그램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거래기본계약’이란 홈쇼핑 납품업자가 홈쇼핑 입점 시 홈쇼핑방송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 경우 계약주체 간의 권리 및 의무, 대

금 지급방법, 소비자보호 원칙 등을 포함한다.

5. ‘방송조건합의서’란 거래기본계약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품판매방송에 관한 조건(프로그램명, 방송예정일, 상품코드명, 구성 상품, 판매가, 협력사 지급액, 매입형태, 배송/수거 형태)에 관하여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에 체결된 계약을 의미한다.
6.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이란 판매촉진비용을 제외한 판매전문가·보조출연자(유명인사, 상품전문가, 모델)·방청객 등의 방송출연과 방송세트(무대장치설비 등) 등 상품소개 프로그램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7. ‘사전제작영상물’이란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상품판매방송 시 해당상품의 효능·효과 등의 정보를 추가 제공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상품 이미지의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사전에 제작하여 해당 상품판매방송에서 방송하는 영상물을 의미한다.
8. ‘판매수수료’란 홈쇼핑방송사업자가 판매한 상품에 대해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제3조(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방식)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거래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수탁거래방식’이란 홈쇼핑방송사업자가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방식을 말한다.
2. ‘직매입거래방식’이란 홈쇼핑방송사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매입한 상품에 대한 재고 책임을 부담하는 거래방식을 의미한다.

3. ‘특약매입거래방식’이란 홈쇼핑방송사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방식을 말한다.

제4조(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수익배분방식)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수익배분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률제방식’이란 홈쇼핑방송사업자를 통해 판매된 상품판매액의 일정비율을 납품업자가 홈쇼핑방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2. ‘정액제방식’이란 홈쇼핑방송사업자를 통해 판매된 상품판매액과 상관없이 납품업자가 일정 금액을 홈쇼핑방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3. ‘혼합배분(정률+정액)방식’이란 제1호와 제2호를 혼합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제5조(기본원칙)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홈쇼핑방송사업자는 납품업자에게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는 방송조건합의서에 방송편성과 관련한 내용을 합의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홈쇼핑방송사업자는 납품업자가 상품판매방송 편성 확정 여부를 방송일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방송조건합의서를 방송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4. 홈쇼핑방송사업자는 납품업자가 다른 홈쇼핑방송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법성 심사기준) 이 가이드라인에서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금지행위 유형은 당해 행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의 불공정성과 방송의 공공성 및 시청자 권리 등을 비교하여 불공정성의 효과가 보다 큰 경우에 위법한 것으로 본다.

제2장 금지행위 세부사항

제7조(방송편성의 부당한 취소·변경 금지) ① 홈쇼핑방송사업자는 방송 예정일 3일전까지 납품업자와 방송조건합의서를 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예정일 전일까지는 방송조건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홈쇼핑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방적으로 상품 판매방송의 일자·시각·분량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송예정시간 전까지 방송조건합의서 상 판매 준비 수량의 확보가 명백하게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상품에 하자가 명백하여 상품판매방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자 간 자율의사 결정에 의한 경우
 4. 기타 납품업자에게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있는 경우
- ③ 제2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홈쇼핑방송사업자가 방송조건합의서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 즉시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홈쇼핑방송사업자는 본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조건합의서 및 서면 고지서를 해당 상품 판매 방송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정액수수료의 강요 금지) 홈쇼핑방송사업자는 납품업자가 정액제 방식 또는 혼합배분(정률+정액) 방식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송조건합의서 체결시 다른 납품업자에 비해 상품판매방송의 일자·시각·분량을 현저히 불리하게 결정하는 행위
2. 방송조건합의서 상의 상품판매방송의 일자·시각·분량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제9조(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의 부당한 전가 금지) ① 홈쇼핑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자에 대하여 상품판매방송의 사전제작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출연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전가할 수 없다.

- ② 납품업자가 거래기본계약 또는 방송조건합의서의 내용과 달리 방송에

투입될 판매전문가·보조출연자(유명인사, 상품전문가, 모델)·방청객 등의 방송출연과 방송세트(무대장치설비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경우, 그 추가·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제10조(사전제작영상물 제작비용) ① 홈쇼핑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전제작영상물 제작비용 분담 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납품업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1. 제공주체
 2. 사용료 지급여부
 3. 제2호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
- ②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사전제작영상물 제작비용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등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방송 조건함의서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홈쇼핑방송사업자는 사전제작영상물 제작과 관련하여 납품업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특정 외주업체와 방송제작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홈쇼핑방송 상생협력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본 가이드라인에 구체화되지 않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홈쇼핑방송 상생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한국TV홈쇼핑협회·한국T커머스협회·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

회·관계 공무원이 각각 추천하는 2인과 비영리 시청자권익보호단체, 법률 전문가, 관계 공무원 1인을 포함한 총 11명 이하로 한다.

③ 홈쇼핑방송 상생협력협의회 구성원은 언제든지 협의회에서 논의할 사안의 제안과 함께 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의회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은 본 가이드라인의 해석과 적용 및 개정에 참고할 수 있다.

제12조(관련 법령의 준수 등) 홈쇼핑방송사업자는 납품업자와 관련 계약을 협의 또는 체결할 때는 「방송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동 가이드라인은 2019. 1.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